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연구회 운영 지침 및 심의 규정

제정 2008년 10월 25일
일부 개정 2010년 11월 26일
일부 개정 2013년 1월 25일
일부 개정 2013년 8월 7일

제 1 조 (목적)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과 관련된 소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학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연구회란 심장 및 혈관질환 관련 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원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서 학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회가 승인하는 학술 모임을 말한다.

제 3 조 (구성)

연구회는 50명 이상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임원)

연구회는 회장과 다수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신청방법)

연구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인준한다.

구비서류

1. 신청서(공문양식)
2. 연구회 내규
3. 최근 2년 동안의 학술활동보고서(소정양식)
4. 회원명부
5. 회원의 서명이 날인된 회원 가입 신청서 사본

제 6 조 (심의 및 설립 요건)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연구회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심의한다.
2. 연구회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회 회원 중 최소 50 명 이상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1년에 2회 이상, 최소 2년간 누적된 학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③ 보편 타당한 원칙의 연구회 내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의무)

연구회는 연 1 회 이상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규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에서 주관하는 통합 세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8 조 (후원)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연구회는 학술 모임 개최 및 연구 사업 진행 시 학회에 후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후원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2. 후원 가능한 학술 모임 및 연구 사업은 해당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후원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연구회 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집 공문의 발송
 - ② 학술활동비, 연구비, 운영비 관리
 - ③ 학술 행사 지원

제 9 조 (후원 방법 및 절차)

1. 연구회는 학술 모임 및 연구 사업 실시 최소 2 개월 전 서면에 의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후원 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술활동계획서 혹은 연구(사업)계획서
 - ② 사업 예산서
2. 상임이사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원 여부 및 방법을 정한다.
3.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는 연구회 후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제외한 잔액은 연구회 적립금으로 전환한다.

제 10 조 (간접비)

연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모집된 연구회 후원금의 10%를 간접비로 징수한다.

제 11 조 (적립금의 사용)

1. 연구회 적립금은 별도 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회 학술활동비, 연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회 적립금의 사용 방법 및 절차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계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회는 해당년도 학술활동보고서를 이듬해 2 월 말까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무)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연구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학회에서 지원받은 후원금에 대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산)

연구회는 연구활동과 업적이 미진한 경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신설 연구회의 경우 3 년간의 연구활동과 업적을 심의한 후 해체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지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